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2. 협의회 개요

가. 가입일 : 2017. 4. 7.

나. 설립형태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다. 설립목적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

라. 회장 : 전남 신안군수

마. 부담금 : 연 3,000천원

바. 참여현황 : 25개 지방자치단체 (2024. 3월 기준)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서울 (5)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 성북구, 구로구	인천 (3)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
경기 (5)	광명시, 광주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충남 (4)	당진시,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전남 (5)	여수시, 담양군, 신안군, 순천시, 화순군	경남 (3)	거제시, 남해군, 김해시

3. 탈퇴 필요성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여 협의회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 2) 지방자치법 제175조(협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나. 향후계획

- 1) 규약탈퇴 고시
- 2) 사무국 및 회원도시 대상 탈퇴공문 발송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회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8.09.17>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자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을 제출한 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③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은 협의회에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을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기준 : 2024. 3월)

지방정부명	비 고
<p>서울 금천구, 서울 성동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동구,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 전남 담양군, 전남 신안군, 전남 순천시, 전남 화순군, 경남 거제시, 경남 남해군, 경남 김해시</p>	25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69조(행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